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(대안)

의 안 번 호 1870

제안년월일: 2020년 9월 4일 제 안 자: 환경수자원위원장

1. 대안의 제안경위

- 서윤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(의안번호:제1659호)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「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」(의안번호:제1733호)을 일괄 심사한 결과,
- 2건의 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, 내용을 수정· 통합하여 「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(대안)」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.

2. 대안의 제안사유

○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기간을 조정하고 같은 날 여러 운행제한 위반으로 인해 과태료가 중복 부과되지 않도록 조례를 정비하여 시민 의 부담을 줄이며, 시민의 구제권 확보를 위하여 과태료 부과·징수에 대한 이의제기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.

3. 대안의 주요골자

- 가. 「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21조에 따른 미세먼지 계절 관리기간에는 조례에서 정한 운행제한을 시행하지 않도록 규정함.
- 나. 조례와 타 법령(「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혹은 「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」)에서 정한 각각의 운행제한 조치를 동일한 날 위반한 자동차가 타 법령에 따른 운행제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본 조례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함.
- 다. 과태료 부과·징수에 대한 이의제기 사항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함.

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(대안)

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 중 "「대기환경보전법」(이하 "대기법"이라 한다)"를 "「대기환경보전법」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 중 "대기법"을 각각 "「대기환경보전법」"으로 한다.

제3조제1항제2호 중 "대기법"을 "「대기환경보전법」"으로, "시·도 조례"를 "시·도 조례 또는 시·군의 조례"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"대기법"을 "「대기환경보전법」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"저공해엔진 개조·교체"를 "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"로 한다.

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조의2(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기간) 시장은 제3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자동차에 대해 상시 운행제한을 시행할 수 있다. 다만, 「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21조에 따른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에는 운행 제한을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제4조제1항 중 "무인단속시스템"을 "단속시스템(차량에 장착된 단속시스템을

포함한다. 이하 같다)"로, "단속 담당공무원(이하"단속공무원"이라 한다)"를 "단속 담당공무원(이하 "단속공무원"이라 한다)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무인단속시스템"을 "단속시스템"으로, "교부"를 "발급"으로 한다.

제5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5항(종전의 제4항) 중 "부과·징수 및 감면"을 "부과·징수, 감면 및 이의제기"로 한다.

- ④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운행제한 대상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동일한 운행제한 위반일에는 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.
- 1. 「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18조에 따른 자동차 운행 제한 조치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
- 2. 「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」 제30조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 조치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

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서식으로 하고,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에 관한 적용례) 제5조제4항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부과하는 과태료부터 적용한다.

[별지 서식]

일련번호 :			
운행제한 위반 통지서			
소유자	성 명 (상호)	생년월일 (사업자등록번	ই)
	주 소		
위반내용	차량번호	최초등록일	
	차 명	차대번호	
	총중량(kg)	배기량(cc)	
	운행장소	운행일시	
	단속방법	단속시스템 단속, 단속공무원 단속	

「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」 제29조 및 「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의거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에서 운행하다가 단속되었기에 「운행제한 위반 통지서」를 발급합니다.

- ※ 처음 1회 위반 시에는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저공해 조치를 하여야 하며, 30일이 지난 후에는 매 위반 시마다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.
- ※ 이 통지에 이의가 있으시면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년 월 일까지 서울특별시 차량공해저감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
☞ 문의전화: 서울특별시 차량공해저감과 (02-2133-3659)

년 월 일

서울특별시장 📵

※ 첨부 : 위반사실 근거자료

210mmx297mm[일반용지 60g/m²(재활용품)]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	제2조(정의)
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	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"배출가스저감장치"란 자동차에서	2
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	
위하여 자동차에 부착하는 장치	
로써 「대기환경보전법」(이하"대	<u>「대기환경보전법」</u>
기법"이라 한다) 제60조에 따라	
인증 받은 장치를 말한다.	
3. "저공해엔진"이란 자동차에서 배출	3
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	
엔진(엔진 개조에 사용하는 부품을	
포함한다)으로서 <u>대기법</u> 제60조에	<u>「대기환경보전법」</u>
따라 인증 받은 장치를 말한다.	·.
4. "저공해 조치"란 배출가스저감장	4
치의 부착,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	
또는 교체, <u>대기법</u> 제58조에 따라	「대기환경보전법」
조기에 폐차하는 것을 말한다.	
5. (생 략)	5. (현행과 같음)
제3조(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	제3조(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
대상) ① 시장은 녹색교통지역을	대상) ①
제외한 공해차량제한지역에서 특별법	
제2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	
하나에 해당되는 자동차에 대하여	
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. 다만, 해당	

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	
현 행	개 정 안
자동차에 적합한 배출가스저감장치	
또는 저공해엔진이 인증·보급되지	
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운행	
제한 대상에서 제외한다.	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<u>대기법</u> 제58조제1항에 따라 대	2. 「대기환경보전법」
기관리권역에 소재한 <u>시·도 조례</u> 로	<u>시·도 조례 또는</u>
정한 저공해조치 명령을 받은 자	<u>시·군의 조례</u>
동차로서 이행기한 내에 배출가스	
저감장치 부착하지 아니하였거나	
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	
하지 아니한 자동차	
3. 특별법 제26조제5항제2호에	3
따라 대기관리권역 외의 지역을	
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	
사업용 경유자동차 중 <u>대기법</u> 제	<u>「대기환경보전법」</u>
46조제3항에 따른 배출가스보증	
기간이 지난 자동차로서 배출가	
스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하였	
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	
교체하지 아니한 자동차	
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운행제한은	②
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또는 <u>저공해</u>	저공해
<u>엔진 개조·교체</u> 에 따른 보조금 지원	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
여부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별도로	
시기를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. 이	
경우 시장은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.	

현 행	개 정 안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<u>〈신 설〉</u>	제3조의2(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기간) 시장은 제3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자동차에 대해 상시 운행제한 을 시행할 수 있다. 다만, 「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」제21조 에 따른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에는 운행제한을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.
제4조(운행제한 대상 자동차의 단속) ① 시장은 공해차량제한지역에서 운행제한 대상 자동차의 단속을 위하여 무인단속시스템을 설치·운영할 수 있으며, 단속 담당공무원(이하"단속공무원"이라 한다)을 임명하여 위반 자동차를 단속하게 할수 있다. ② 시장은 무인단속시스템 또는 단속 공무원에 의하여 운행제한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 별지 서식에 따른 운행제한 위반 통지서를 작성하여 자동차소유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. ③ (생략)	제4조(운행제한 대상 자동차의 단속) ①
① ~ ③ (생 략) <u>〈신 설〉</u>	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운행제한 대상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동일한 운행

현 행	개 정 안
④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<u>부과·징</u> 수 및 감면 등에 관한 사항은 「질서 위반행위규제법」에 따른다.	제한 위반일에는 제1항에 따른 과 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. 1. 「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18조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 조치를 위반하여 과태료 를 부과받은 경우 2. 「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」 제3 ①조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 조치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⑤
【 <u>별지 제1호 서식</u> 】	【 <u>별지 서식</u> 】

현 행

일련번호	:			
운행제한 위반 통지서				
소유자	성 명		생년월일	
	(상호)		(사업자등록번호)	
	주 소			
위반내용	차량번호		최초등록일	
	차 명		차대번호	
	총중량(kg)		배기량(cc)	
	운행장소		운행일시	
	단속방법	무인단속	· 시스템 , 단속공무	원 단속

「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」 제29조 및 「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 례」 제4조에 의거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에서 운행하 다가 **단속되었기** 「운행제한 위반 통지서」를 **발부**합니다.

- ** 처음 1회 위반시에는 저공해조치 기간 등을 고려하여
 30일 동안 행정지도하나 그 이후 위반시에는 매 위반시마다
 신마다
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.
- ※ 이 통지에 이의가 있으시면 관련 <u>중병자료</u>를 첨부하여
 년 월 일까지 서울특별시 차량공해저감과로 <u>제출(또</u>
 는 FAX 02-2133-1025)바랍니다.

☞ 문의전화 : 서울특별시 차량공해저감과 (02-2133-3659)

년 월 일

서 울 특 별 시 장

※ 첨부 : 위반사실 근거자료

210mmx297mm[일반용지 60g/m²(재활용품)]

개 정 안

일련번호 :				
운행제한 위반 통지서				
소유자	성 명		생년월일	
	(상호)		(사업자등록번호)	
	주 소			
위반내용	차량번호		최초등록일	
	차 명		차대번호	
	총중량(kg)		배기량(cc)	
	운행장소		운행일시	
	단속방법	단속시스	: 템 단속 , 단속공두	'원 단속

「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」 제29조 및 「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 례」 제4조에 의거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에서 운행하 다가 **단속되었기에** 「운행제한 위반 통지서」를 **발급**합니다.

- ** 처음 1회 위반 시에는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저공해 조치를 하여야 하며, 30일이 지난 후에는 매 위반시마다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.
- ※ 이 통지에 이의가 있으시면 관련 중명서류를 첨부하여
 년 월 일까지 서울특별시 차량공해저감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
☞ 문의전화 : 서울특별시 차량공해저감과 (02-2133-3659)

년 월 일

서울특별시장 덴

※ 첨부 : 위반사실 근거자료

210mmx297mm[일반용지 60g/m*(재활용품)]